문화상규정

제1장 총 칙

- 제 1 조 경희대학교에 문화상제도를 둔다.
- 제 2 조 문화상제도는 본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학생과 졸업생 및 교직원들에게 진리탐구와 창의력을 배양시키고 학술 및 예능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인류 문화발전에 기여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본 규정은 문화상제도에 관한 응모, 심사, 시상 등 문화상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한다.

제2장 문화상의 종별 및 응모

- 제 4 조 문화상 종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학술상
 - 2. 예능상
 - 3. 공로상 각 시상 부문에 관한 세칙(응모범위)은 별표에 의한다.
- 제 5 조 문화상제도에 의한 시상은 매년 3월에, 응모요강은 4월, 작품접수 마감은 12월 10일로 한다.
- 제 6 조 문화상제도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은 본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학생과 졸업생 및 교직원에 한한다.
- 제 7 조 제4조에 규정된 공로상에 한하여 학처장 및 기관장의 추천으로써 응모한 것으로 대할 수 있다.
- 제 8 조 문화상제도와 유사한 다른 어떠한 제도에 의하여 시상된 작품은 응모할 수 없으며 본 규정에 의하여 응모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 반환할 수 있다.)
- 제 9 조 문화상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본 대학교 부총장이 겸임하고 상임위원과 임시위원을 두되 상임위원은 각 분과위원장이 되며 임시위원은 본교 교수 중에서 해당분과 위원장의 구신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하되 매년 심사가

끝나는대로 해임한다.

제10조 문화상 심사위원회는 문화상제도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응모 작품의 본심사인 최종심사를 행하며 본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분과 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서, 분과위원은 임시위원으로서 선임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생략)

제11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심사에 있어 결정권을 가진다.

제12조 본 심사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완료되어 문화상 예비심사서(서식 1)에 의하여 회부되는 것을 종합심사하여 시상의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여 시상을 한다.

제13조 각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예비심사의 결과 그 의견을 종합 결정하여 이를 본심사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사위원장의 유고시는 총장이 임명하는 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15조 문화상 담당자는 문화상에 관한 제반 업무를 본다.

제3장 심사 및 시상

제16조 문화상에 응모한 작품은 별표 심사기준에 의하여 예비 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등급이 확정된다.

제17조 1개 작품에 대하여 3인 이상 다수인의 예비심사위원으로 등급 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장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며 본심사에서도 상기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확정한다.

제18조 본 심사는 상임위원을 참석케 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 분과위원이나 특별심 사를 위촉한 위원을 참석케 하고 그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19조 공로상을 추천할 때에는 각 추천자는 시상등급을 추천서에 명시할 수 없으며 등급은 본 심사에서 결정한다.

제20조 문화상 규정의 제반 해석과 심사기준의 결정이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해석한다.

제21조 심사기준에 있어서는 본 대학교(대학원 포함)의 재학생과 졸업생을 동일하게 다루되 실력의 차이를 참작하여 본 심사에서 등급 결정을 재량할 수 있다.

제22조 졸업생 및 교직원으로서 응모한 자가 기성작가인 경우에는 본심사에서 이에 대한 등급결정을 고려할 수 있다.

제23조 졸업생과 교직원에 한하여 응모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연구결과 또는 작품이 특히 우수하여 시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화상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공로상으로 시상할 수 있으며 이는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24조 시상 등급별 시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	부상	상금
수급	메달	200만원
우급	메달	100만원
미급	메달	50만원
양급	메달	30만원
가급	메달	10만원

부 칙

- 1. 본 규정은 1976년 5월 2일부터 실시한다.
- 2. 1955년 5월 19일에 제정하고 1966, 1972년에 수정한 문화상 규정은 본 규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일자로 이를 폐기한다.